M - 128 - 2012

시멘트 벽돌·블록 성형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 창 률

ㅇ 개정자 : 안전연구실

o 제·개정경과

- 2000년 11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2000년 12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- 사업장 운전 매뉴얼
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설비별 안전장치 개발
- o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1절 제87조(원동기·회 전축 등의 위험방지)
- 0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 월 20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시멘트 벽돌·블록 성형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1장 제1절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)의 규정에 따라 시멘트 벽돌・블록 성형기의 방호조치 선정 및 설치와 사용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사업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시멘트 벽돌・블록 성형기에 적용한다.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시 멘트 벽돌・블록 성형기의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혼합기"라 함은 시멘트 벽돌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시멘트, 골재 및 물을 적정한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하는 설비를 말한다.
- (나) "성형기"라 함은 시멘트 벽돌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형틀에 모르타르를 투입하여 가압·진동시켜 제품형상을 만드는 설비를 말하며, 그 주요부분은 호퍼, 형틀, 가압진동부 및 송급취출장치로 구성되어 있다.
- (다) "엘리베이터(Elevator) 또는 오토로더(Autoloader)"라 함은 성형된 벽돌제품이 성형기에서 배출되어 유압푸셔 또는 체인컨베이어에 의해 파렛트로

M - 128 - 2012

1판씩 이송될 때 자동적재되는 설비를 엘리베이터, 반자동으로 적재되는 설비를 오토로더라고 한다.

- (라) "로우레이터(Lowlator) 또는 언로더(Unloader)"라 함은 양생실에서 양생 완료된 벽돌제품을 핑거카(Finger car) 또는 지게차로 유압푸셔 또는 체 인컨베이어에 내려놓을 때 포장공정까지 이송시키는 중간적재설비로 자 동설비로 사용되는 것을 로우레이터, 반자동설비로 사용되는 것을 언로 더라고 한다.
- (마) "큐빙기(Cubing machine)"라 함은 벽돌이 유압푸셔 또는 컨베이어에 의해 이송되어 일정 위치에서 대기하면 상하, 좌우 및 회전 등 복합운동을 하여 일정량씩 집어 이송후 적재대에 최종 적재하는 설비를 말한다.
- (바) "유압푸셔"라 함은 체인컨베이어와 작업형태는 유사하나 경계석 등 중량이 큰 벽돌제품을 취급할 때 사용되며, 전후진 동작에 의하여 컨베이어 상부에 위치한 벽돌을 밀어서 이송시키는 설비를 말한다.
- (사) "핑거카"라 함은 엘리베이터에 적재된 벽돌을 양생실로 옮기는 작업과 양생실에서 양생완료된 벽돌을 로우레이터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설비로, 엘리베이터 또는 로우레이터의 신호를 감지하여 레일을 따라 자동으로 양생실을 왕복하는 운반설비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 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시멘트 벽돌・블록 성형기의 방호조치

4.1 위험발생장소

시멘트 벽돌·블록 성형기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가 있는지 확인한다.

M - 128 - 2012

- (1) 시멘트, 골재 등 원재료 적재 및 이송부분
- (2) 혼합기 내부 및 작동부분
- (3) 성형기의 몰탈공급통 구동링크 전후진 작동부분 및 압축판 상ㆍ하 작동부분
- (4) 유압푸셔, 체인컨베이어, 핑거카 및 지게차 등 이송설비의 작동 부분
- (5) 엘리베이터, 로우레이터, 오토로더 및 언로더 등 적재설비의 동작부분
- (6) 큐빙기의 작동반경 부분
- (7) 지게차, 트럭의 상하차 작업장소

4.2 원재료 적재 및 이송작업

4.2.1 주요위험

원재료의 입고시 사용되는 하역운반기계 등에 위험이 존재하고 또 골재이송 등이 자동으로 운전되므로 초보자 등 작업에 익숙치 않은 근로자는 컨베이어가 불시에 작동함으로 인한 협착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.

4.2.2 방호조치

- (1) 입고된 원재료를 차량으로 골재호퍼에 투입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미리 호퍼내에 작업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차량을 유도한 다.
- (2) 컨베이어 가동전 경보벨을 울려 컨베이어가 가동됨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하며 컨베이어의 가동상태 및 위험부위를 수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감시카메라 (CCTV)를 설치하여 운전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
M - 128 - 2012

4.3 계량 및 혼합작업

4.3.1 주요위험

- (1) 작업종료후 혼합기 내벽에 잔류되어 있는 몰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작업 시 혼합기 내부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경우에 협착재 해가 발생할 수 있다.
- (2) 혼합기 가동중에 손을 넣어 몰탈의 배합정도(수분함유량)를 확인하려고할 경우 혼합기 회전날 부위의 위험점에 접촉함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다.

4.3.2 방호조치

- (1) 혼합기 덮개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를 닫아야만 혼합기가 가동되도록 한다.
- (2) 혼합 작업중 작동불량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작업자의 임의접근을 금지하고 주운전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안전작업절차에 따라 조치하게한다.
- (3) 정비, 청소 등으로 부득이 혼합기 내부에 입조하여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 후 작업한다.
 - (가)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 감독
 - (나) 혼합기 구동모타의 주전원 차단
 - (다) 조작스위치에 시건장치 후 열쇠는 작업자가 직접 지참
 - (라) 전원스위치 등에 "작업중" 표지판 부착
 - (마) 작업종료후 전원 투입시에는 혼합기 내에 작업자가 없음을 육안으로 확인

4.4 성형작업

M - 128 - 2012

4.4.1 주요위험

벽돌제품의 성형작업은 성형기 하부 또는 측면에 설치된 진동기에서 발생되는 진동과 유압으로 작동되는 압축판이 하강하면서 고압이 가해지므로 성형기 좌·우측면의 각종 구동부분, 몰탈공급통 구동링크의 작동반경 및 성형기 압축 판의 상하운동부 등에서 협착·충돌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.

4.4.2 방호조치

- (1) 성형기의 위험점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형기 전· 후면에는 견고한 안전울을 설치하며 안전울 제작시에는 안전거리를 감안하 여 위험점이 방호되도록 한다.
- (2) 성형기의 수리·점검작업 후에 안전울을 개방한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안되며, 설비 작동 중에는 반드시 안전울을 닫아 위험점 등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.
- (3) 성형기에 설치된 안전울에는 안전울을 닫아야 작동이 가능하고 안전울을 개방할 경우 조작회로가 차단되어 설비작동이 정지되도록 연동장치를 설치 한다.
- (4) 안전울에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연동장치를 2중으로 설치함이 바람직하다.
- (5) 성형기 전·후면 등에 비상시 즉시 정지 가능하도록 비상정지스위치를 설 치하고, 스위치를 조작시에는 작동중인 동력이 차단되어 설비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비상정지스위치를 조작후 복귀시에는 운전조작을 처음 시동상태부터 하 여야만 동작되도록 조치
 - (나) 스위치의 조작부는 눈에 띄기 쉽게 적색 돌출형으로 설치
 - (다) 수동복귀되는 형식으로 설치
- (6) 형틀교체 및 수리점검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성형기 내부에 진입하여 작업 할 경우 압축판의 불시하강 또는 스위치 오조작으로 인하여 성형기가 작동

M - 128 - 2012

시에는 협착재해로 직결될 위험성이 크므로 다음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한다.

- (가) 주전원 차단
- (나) 키전환 조작스위치에 있는 열쇠 잠금 및 작업자가 열쇠를 지참한 후 작 업
- (다) 주전원 스위치 및 조작스위치에 "작업중" 표지판 부착
- (라) 성형기 압축판에 고정핀 체결 또는 안전블록 설치
- (마) 작업지휘자 배치

4.5 컨베이어 이송 작업

4.5.1 주요위험

컨베이어 설비는 성형, 양생, 적재작업 등 주요 공정간을 연결하는 보조운반 설비로 주작업 관련신호에 따라 간헐적으로 작동되므로 가동상태 뿐만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회전부 및 왕복운동부 등에 임의로 접근할 경우 협착·충돌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.

4.5.2 방호조치

- (1) 컨베이어 설비중 회전부 및 왕복운동 부위에는 안전울 또는 방책 등을 설치하여 접근을 방지한다.
- (2) 포장준비, 적재예비, 불량품 취출작업 등으로 컨베이어 주위에 접근하여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, 키전환스위치의 전원을 차단시킨후 작업자가 열쇠를 지참하고 적절한 수공구 등을 사용한다.
- (3) 컨베이어 상부로 근로자가 통행할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마다 건널다리를 설치한다.

4.6 핑거카 이송 작업

4.6.1 주요위험

M - 128 - 2012

성형된 벽돌제품을 양생실로 이송 및 양생된 제품을 다시 적재공정으로 이송할 때 사용하는 자동이송설비로, 전후공정의 신호를 받아 간헐적으로 레일을 따라 자동운전됨에 따라, 핑거카 주위에 근로자가 위치할 경우 충돌·협착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.

4.6.2 방호조치

- (1) 핑거카 전후의 진행방향에 근접센서를 설치하여 장해물 또는 작업자가 접근할 경우 전원이 차단되어 핑거카가 정지되도록 한다.
- (2) 핑거카에는 경보장치(경보등 또는 경보음장치)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한다.

4.7 적재(큐빙)작업

4.7.1 주요위험

큐빙기는 유압에 의하여 자동으로 상하, 좌우 및 회전운동을 하며 파렛트 상부에 벽돌제품을 적재하기 때문에 작동반경이 넓어 협착 또는 충돌재해 발생위험이 높다.

4.7.2 방호조치

- (1) 큐빙기 작동반경내에는 안전울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위험구역내에 접근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한다.
- (2) 안전울의 출입문에는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개방시에는 큐빙기 작동이 정지되도록 한다.
- (3) 큐빙기 작업후 파렛트 상부에 잔류벽돌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간이 스크레이퍼 또는 유압 스크레이퍼를 설치하여, 작업자가 큐빙기 작동 위험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.
 - (가) 적재공정과 후속공정간 이송거리가 짧거나, 파렛트와 파렛트 사이 공간

M - 128 - 2012

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재작업 후단 컨베이어 상부에 간이 스크 레이퍼를 설치하여 파렛트 상부의 잔류 벽돌이 컨베이어 하단부로 제거 되고 파렛트만 이송되도록 한다.<별표 1>

- (나) 간이 스크레이퍼 설치가 불가능한 적재설비에 대해서는 유압 스크레이 퍼를 컨베이어 측면에 설치하여 파렛트 상부에 잔류 벽돌이 발생할 경우 광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유압 스크레이퍼가 전진하면서 잔류벽돌을 컨 베이어 측면으로 제거한다.<별표 2>
- (4) 큐빙기의 수리·보수 및 점검 등으로 큐빙기 홀더(Holder) 하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 유압 파손으로 큐빙기 홀더가 불시 하강하여 근로자가 협착될 수 있으므로 큐빙기 본체 측면에 쐐기식 브레이크 장치를 설치하여, 큐빙기의 주전원을 차단시에는 브레이크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홀더샤프트가 고정되도록 한다.<별표 3>

4.8 야적 및 출하작업

4.8.1 주요위험

- (1) 포장된 벽돌제품을 지게차를 사용하여 운반시 협착 및 충돌 등의 재해 위 험성이 있다.
- (2) 협소한 작업공간 등으로 적재물을 과다하게 높이 적재하거나 적재물의 관리가 소홀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시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.

4.8.2 방호조치

- (1) 파렛트에 적재된 벽돌제품은 단위중량이 100kgf 이상으로 지게차 등 하역운반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따라 작업한다.
- (2) 지게차 운행경로를 수시 확인하고 작업장 바닥이 평탄한 상태가 유지되도 록하여 요철, 기울어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, 특히 작업장 내부에는 지 게차의 운행경로를 표시하여 운행하도록 한다.

M - 128 - 2012

- (3) 지게차의 운전은 임의 작업자 운전에 따른 재해가 빈발하므로 지정운전자이외에는 지게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열쇠 관리 등을 철저히 한다.
- (4) 옥외 야적장에 벽돌제품을 적재시에는 적정한 높이(2단 이하)로 적재함이 바람직하나, 작업장 공간 협소 등으로 부득이 3단 이상 적재할 경우 로프로 매는 등 붕괴예방 조치를 하고 수시로 적재상태를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을 제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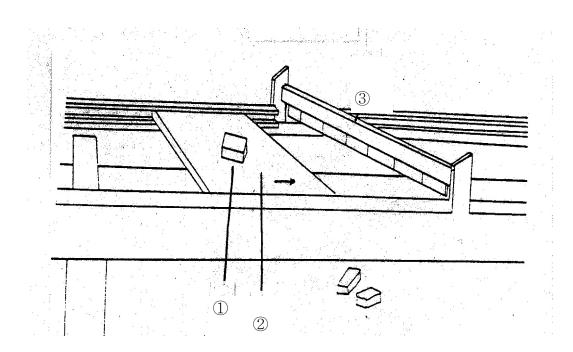
<별표 1> 잔류벽돌 제거용 간이 스크레이퍼

잔류벽돌 제거용 간이 스크레이퍼

위 험 점

작업자가 파렛트 상부의 잔류벽돌 제거작업시 상하, 좌우 및 회전운동하는 큐빙기에 의한 협착 · 충돌 재해 위험

• 외관구조



- ① 잔류벽돌 ② 이송파렛트 ③ 간이 스크레이퍼

• 방호원리

- 컨베이어 상부에 막대형태의 간이 스크레이퍼를 설치
- 파렛트 상부의 잔류벽돌이 컨베이어를 따라 이송되면서 간이 스크레이 퍼에 의해 잔류벽돌이 제거되도록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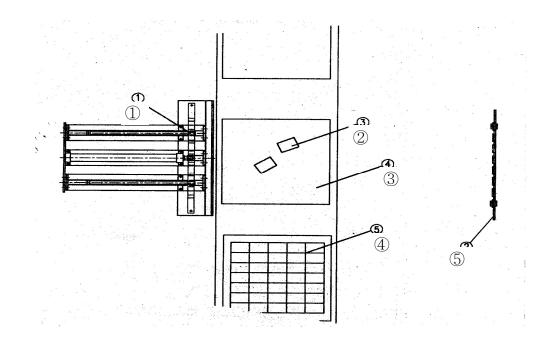
<별표 2> 잔류벽돌 제거용 유압 스크레이퍼

잔류벽돌 제거용 유압 스크레이퍼

위 험 점

작업자가 파렛트 상부의 잔류벽돌 제거작업시 상하, 좌우 및 회전운동하는 큐빙기에 의한 협착·충돌 재해 위험

• 외관구조



① 유압 스크레이퍼 ② 잔류벽돌 ③ 이송 파렛트 ④ 벽돌 ⑤ 광센서 반사판

• 방호원리

- 적재판 측면에 광센서 및 유압 스크레이퍼를 설치
- 잔류된 벽돌 발생시 광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유압스크레이퍼가 전진하여 잔류벽돌을 제거토록 함

KOSHA GUIDE M - 128 - 20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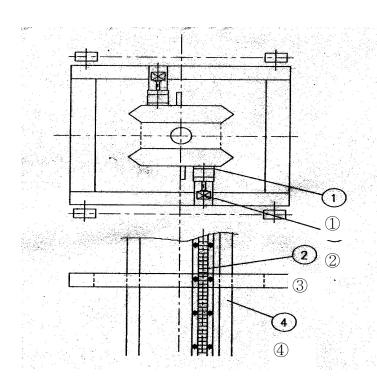
<별표 3> 큐빙기 불시하강 방지 브레이크

큐빙기 홀더 하강방지 브레이크

위 험 점

큐빙기의 수리, 보수시 작업자가 큐빙기의 홀더 하부에 위치할 경우 홀더 불시하강에 의한 협착 위험

• 외관구조



① 안전핀 ② 안전핀 구동실린더 ③ 클램프 브라켓트 ④ 큐빙기 샤프트

• 방호원리

- 큐빙기 운동부인 홀더 샤프트에 쐐기방식의 안전핀(브레이크)을 설치
- 큐빙기 전원 차단시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어 홀더 샤프트를 고정 시킴으로써 큐빙기 홀더의 불시 하강을 방지
- 핀의 투입은 스프링, 해제는 유압으로 구동되도록 설치